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6. 8 (목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6. 6. 22(목)
- 다. 상정일자 : 2006. 6. 23(금) 제12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6. 6. 22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지역도시과장 박태영)

가. 제안이유

- 2005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 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..

나. 주요골자

- 2004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잉 여 금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761	15,986	11,572	4,413

- 2004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징수결정액	수 납 액	미수납액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761	16,224	15,986	237

○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지 출 액	이 월 액	불 용 액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761	16,150	4,101	476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가. 2005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- 2005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107억 6,100만원임

나.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

- 세입부분 징수결정액은 162억 2,422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50.76%이고 수납액은 159억 8,68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48.55%이고 미수납액은 2억 3,733만원으로 예산액대비 2.21%임

다.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

-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161억 5,079만원 대비 71.66%인 115억 7,290만원을 지출하였고, 이월액은 41억 1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.39%이고, 세출불용액은 4억 7,6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.95%입니다.

라. 검토의견

-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
 - 세입예산은 조사결정, 세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었고,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

- 기타 예산의 집행관리 업무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
- 다만, 상수도 급수 수익은 23억 4,827만원,
총괄원가는 61억 9,047만원이므로
상수도 요금수준의 인상요인 163.62%가 발생한 것은
향후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로 남게 되었고
 -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
 - 또한 노후관 개량공사시 대체된 노후관을 제각하는 회계처리를
하여야 함에도 대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,
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 : 2005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·
세출결산승인안 끝.**

2005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23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0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5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□ 2005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세입결산액 (수납액) (B)	B/A (%)		세출결산액 (지출액) (C)	C/A (%)		잉여금 (D)	D/A (%)	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761,642	15,986,884	148.55		11,572,906	107.54		4,413,978	41.02	

가.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 (A)	징수결정액 (B)	B/A (%)		수 납 액 (C)	C/A (%)		미수납액 (D)	D/A (%)	
합 계	10,761,642	16,224,222	150.76		15,986,884	148.55		237,338	2.21	
현 년 도	10,163,539	10,117,804			9,896,516			221,288		
전기미수금	450,000	569,158			553,108			16,050		
전기이월액	148,103	5,537,260			5,537,260			0		

나.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지출액 (C)	이월액		불용액 (E)	E/B (%)	
				C/B (%)	(D)		D/B (%)	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761,642	16,150,799	11,572,906	71.66	4,101,147	25.39	476,746	2.95

다. 잉여금 처리상황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구분	계	건설개 량 이 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 조 금 집 행 잔 액	순세계잉여금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	4,413,978	2,606,099	89,544	1,405,504	-	312,831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-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
-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

나. 기타사항

- 2005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보고서 : 붙임
- 2005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: 붙임

관계법령발취

□ 지방공기업법

제35조(결산) ①관리자는 매 사업년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.

②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시행령

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”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대차대조표
2. 손익계산서
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4.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
5.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
6. 결산부속명세서